

1. 개정 이유

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, 「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」,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상 일부 규제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」 개정

- “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”에 대한 일몰을 해제(안 제17조제2항제1호 중 “제4조 및 제5조”를 “제4조”로, “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”을 “교육기관의 지정 등”으로 개정)
- “제6조 보수교육”에 대한 일몰을 해제(안 제17조제2항제2호 삭제)
- “제16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”에 대한 일몰을 해제(안 제17조제2항제5호 삭제)

나.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개정

- “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및 배치”에 대한 일몰을 해제(안 제10조제2호 삭제)

다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

- “제10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”에 대한 일몰을 해제(안 제18조제3호의2 삭제)

라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

- “제12조제1항 성폭력 상담소 등 운영실적 평가”에 대한 일몰을 해제
(안 제16조제3호 삭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무조정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1. 03. ~ 12. 13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

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제1호 중 “및 제5조” 및 “및 지정취소”을 삭제한다.

제1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2조(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조(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8조제3호의2를 삭제한다.

제4조 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를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

제16조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1.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

현행	개정안
제17조(규제의 재검토) ①·② (생략)	제17조(규제의 재검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1.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	1. 제4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등
2.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	2. <삭제>
3. ~ 4. (생략)	3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1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	5. <삭제>

2.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

현행	개정안
제10조(규제의 재검토) (생략) 1. (생략) 2. 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 인력의 기준	제10조(규제의 재검토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삭제>

3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(생략) 1. ~ 3. (생략) 3의2.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<u>설치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</u> 4. ~ 9. (생략)	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<삭제> 4. ~ 9. (현행과 같음)

4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규제의 재검토) (생략) 1. ~ 2.2 (생략) 3.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, 보호 <u>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</u> <u>대한 평가기준: 2015년 1월 1일</u>	제16조(규제의 재검토) (현행과 같음) 1. ~ 2.2 (현행과 같음) 3. <삭제>